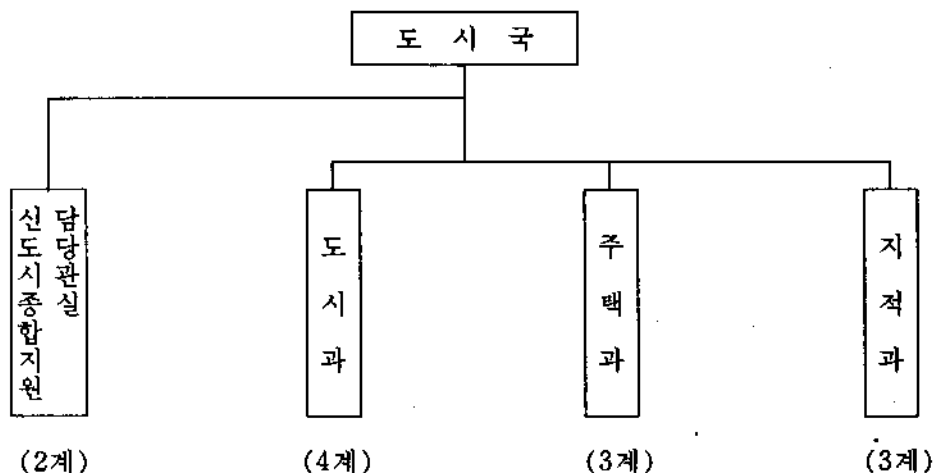


<업무보고 : 도시국>

1. 일반현황

□ 기구 및 정·현원

○ 기 구(1담당관 3과)



○ 정·현원

(단위: 정원/현원)

구분 실·과별	직 렬 별						비 고
	계	행 정	토 목	건 축	지 적	기 타	
합 계	74/74	16/16	23/23	17/17	10/10	8/8	
신도시담당관실	15/15	4/4	4/4	4/4		3/3	
도 시 과	23/23	5/5	16/16			2/2	
주 택 과	21/21	4/4	2/2	13/13		2/2	
지 적 과	15/15	3/3	1/1		10/10	1/1	

□ 주요업무기능

실·과 별	주요 업무
신도시 종합 지원담당관실	○ 신도시내의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 설치 지원 ○ 신도시 주거 편의시설 유치 지원 ○ 신도시 주거생활대책 및 교통대책 ○ 신도시 건설계획 협의조정
도 시 과	○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○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○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○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○ 도시·자연공원(국·도립 및 시·군립 공원) 관리
주 택 과	○ 주택건설계획 수립 ○ 공동주택 관리 ○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○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
지 적 과	○ 토지거래허가 업무 ○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 ○ 지적관리계획 수립 ○ 지적전산 운용

□ '95 예산현황

(단위:백만원)

구	분	예 산 액			주요사업 예산내역
		계	경상비	사업비	
합	계	71,970	736	71,234	
신도시담당관실		61	61	—	
도 시 과		45,543	600	44,943	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26 도시계획도로 38,790 공원조성 4,961
주 택 과		26,344	53	26,291	도시주거환경개선 6,527 AID주택차관환차 152 화장실개량 1,243 부엌·목욕탕개량 3,905 취락구조개선 2,250 농어촌주택개량 12,211
지 적 과		22	22	—	

□ 도시기본현황

○ 도시비율

$$\frac{'80}{56.7\%} \Rightarrow \frac{'85}{73.4\%} \Rightarrow \frac{'90}{81.1\%} \Rightarrow \frac{'94}{85.7\%} \Rightarrow \frac{'95}{86\%(\text{추정})}$$

※ ○ 전 국 : 시도-85.2%, 도-72.1%

○ 도시인구 : 6,291천명(시급 5,582, 읍급 709)

○ 도시계획구역

(단위:km²)

합 계		시 급		읍 급		면 급	
도시수	면 적	도시수	면 적	도시수	면 적	도시수	면 적
93	2,293.72	14	1,401.25	25	483.38	53	409.09

※ ○ 도전체 면적(10,163km²)의 22.6%

○ 광역 도시계획

- 수 원 : 129.2km² (수원 105.56, 용인 18.29, 화성 5.36)
- 의 정 부 : 177.35km² (의정부 81.82, 양주 70.44, 남양주 25.09)
- 안 양 : 131.76km² (안양 57.63, 군포 20.70, 의왕 53.43)
- 반 월 : 356.41km² (안산 77.52, 시흥 140.37, 화성 138.52)
- 구 리 : 128.91km² (구리 31.64, 남양주 97.27)

○ 주 택

가 구 수	주 택 수	보급율(%)		비 고
		경기도	전 국	
2,130천가구	1,594천호	74.9	81.7	주택보급율 63.9(83) → 74.9(94)

※ 유형별 주택수:단독 650, 아파트 731, 연립 125, 다세대 88

○ 공원현황

(단위:km²)

구 분	지 역	면적	해 당 시 군
국립공원	북 한 산	38.74	의정부시, 고양시, 양주군
도립공원	남한산성	36.44	성남시, 하남시, 광주군
시립공원	천 마 산	12.71	남양주시
군립공원	명 지 산	12.73	가평군
도시공원	1,448개소	114.76	수원시 등 31개 시·군
			※ 자연 46개소/58.19km ² , 근린 392개소/51.40km ² (50.7%) (44.8%)
			어린이 1,003개소/2.51km ² , 묘지 7개소/2.66km ² (2.2%) (2.3%)

○ 지적현황

(단위:km)

계	전	답	임 야	대 지	기 타
(3,695천필) 10,163	1,108	1,608	5,821	264	1,362

※ 전국대비:면적 10.2%

○ 공부보유현황

(단위:천매)

구 분	계	토 지	임 야	비 고
대 장	3,695	3,329	366	공유지 연명부 964
도 면	85	79	6	

II. 업무목표 및 방침

목 표

- 도·농을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도시창출
- 녹지와 문화적 삶의 공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건설
-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자족도시 건설

방 침

-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지원으로 임주민 불편 해소추진
- 지역간 조화로운 도시계획으로 쾌적한 도시건설 유도
- 도시기반시설 지속 확충으로 도시기능 제고(주민편익제공)
- 주택의 안정적 건설공급과 낙후된 주거환경개선
-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기능의 도시간 격차해소
- 토지거래제도 확립 및 공정과세를 위한 과표현실화

세계화로 함께 뛰는 도시행정 구현

III. '95 주요업무

1. 5대 신도시 건설종합지원

2.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

- 도시기본계획 수립
- 도시계획 재정비

-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
- 도시계획도로 확충
- 택지개발
- 토지구획정리
-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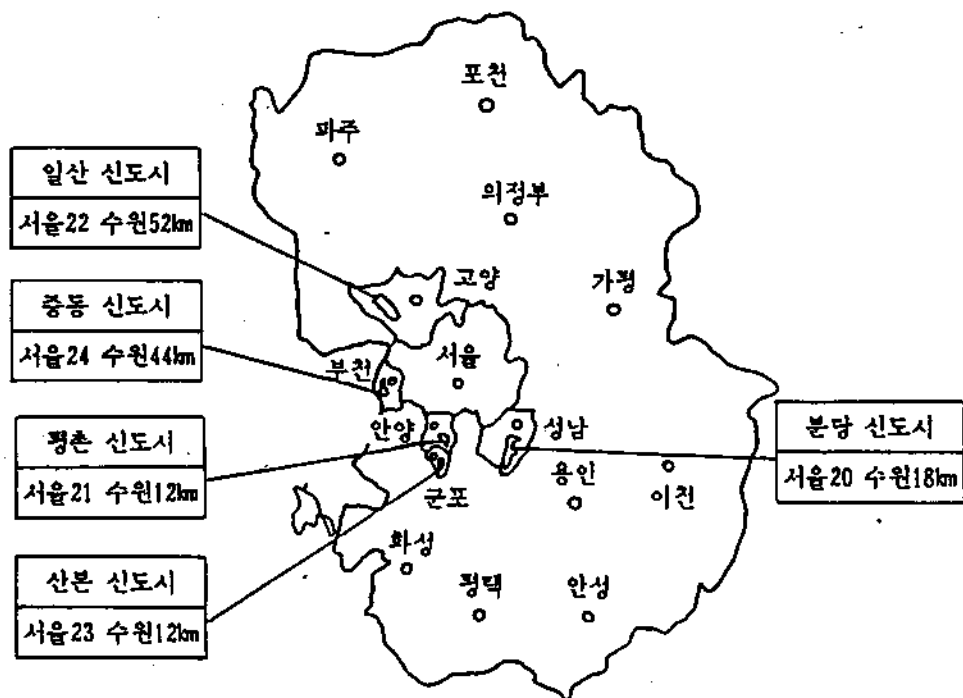
3. 주택건설

- 주택건설계획
- 농어촌 주거환경개선
-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

4. 지적관리

-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이용실태 조사
-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
-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
-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
- 지적전산자료 정비 및 운영

1. 5개 신도시 건설 지원



□ 도시별 개발계획

구 분	계	분당신도시 (성남시)	일산신도시 (고양시)	평촌신도시 (안양시)	산본신도시 (군포시)	중동신도시 (부천시)
개발면적 (천㎡)	50,188	19,691	15,736	5,106	4,203	5,452
주택건설 (호)	291,833	97,580	68,810	42,047	41,974	41,422
수용인구 (천명)	1,167	390	275	168	168	166
사업기간	'89~'95	'89~'95	'90~'95	'89~'95	'89~'94	'90~'95
사업주체		토지개발공사	토지개발공사	토지개발공사	주택공사	부천시+주공+ 토지개발공사
개발전략		업무, 금융, 상업중심 도 시	문화, 관광, 국제회의 중 심도시	기 존 도 시 를 연계한 업무 상업중심	기존도시 구 조를 보완한 안정적 도시	주공, 토개공 과 지자체가 합동 시범적 공동개발

□ 주택건설 및 주민입주

○ 주택공급 계획: 291,833호(단독 11,059, 공동 280,774)

○ 공동주택 공급 및 주민입주

('95. 10월말현재)

구 분		계	분 당	일 산	평 촌	산 본	중 동
계 획 (세대)		280,774	94,570	62,940	41,401	41,397	40,466
주택공급	실 적 (세대)	277,977	92,970	62,482	41,401	40,715	40,409
	진 도 (%)	99	98	99	100	98	99
주민입주	실 적 (세대)	234,127	78,466	50,580	38,844	32,846	33,391
	진 도 (%)	83	83	80	94	79	83

□ 주요 시설물 설치

○ 공공기관 설치 : 205개소중 94개소 준공

⇒ 동사무소, 파출소 등으로 주민입주에 비례 순차적 추진

○ 전 철 : 3개노선중 2개노선 개통 1개노선 시운전중(일산선)

※ 일산선은 금년 12월말에 개통 예정

○ 학 교 : 172개교중 159개교 완공

○ 유통시설 : 백화점, 대형상가 완공 5개소, 추진중 10개소

○ 종합병원 : 13개소중 완공 1개소, 추진중 11개소

○ 농수산물 도매시장 : 3개소중 추진중 1개소

※ 완공 시설물

○ 열병합발전소 4개소 (평촌, 산본은 동일시설 공동사용)

○ 지역난방시설 4 " (")

○ 도시가스시설 5 " (신도시별 1개소)

○ 변 전 소 5 " (")

○ 전 화 국 7 " (분당2, 일산2, 평촌, 산본, 중동)

2.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

① '95 도시기본계획 수립

○ 20년을 단위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 및 미래상 제시

○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입안의 지표를 설정

※ 도시계획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7조

□ 방 침

-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된 계획
- 상위계획과 인접 도시계획 등을 연계하여 수용
 - 국토건설종합계획, 광역권계획, 도건설종합계획, 하위계획 등
- 한계자원인 토지, 물,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도시개발 유도
- 자연경관, 생태계 등 녹지공간확충으로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

□ 현 황

- 목표년도 : 2016년(계획기간 20년)
- 대상도시 : 18개도시
 - 기수립(11) : 수원, 성남, 의정부, 안양, 부천, 광명, 동두천, 과천, 구리, 오산, 이천
 - '95년추진계획(7) : 고양, 하남, 남양주, 평택, 안산, 용인, 안성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-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: 2개도시(고양, 하남)
- 입안 및 용역중 : 5개도시(남양주, 안산, 평택, 용인, 안성)
- 도·농 통합시에 대한 용역비 지원
 - '95. 1. 1. 통합(남양주시 : 미금시+남양주군)
 - 지원금액 : 350백만원(교부세 50, 도비 300)
 - ※ '95. 4. 14. 용역계약('95. 12. 13. 납품예정)
 - '95. 5. 10. 통합(평택시 : 평택시+송탄시+평택군)
 - 지원금액 : 376백만원(도비)
 - ※ '95. 9. 27. 용역계약('96. 5. 27. 납품예정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주민의견 수렴확대 실시

-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
- 시·군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○ 시장, 군수의 계획수립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

- 현지확인 등을 통한 계획내용의 적정성 검토

○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자문)

○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요청

② '95 도시계획 재정비

○ 목표년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

○ 도시기본계획과 장래 도시발전 추세를 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

○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도시 계획을 변경조정

□ 방 침

○ 현실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

○ 특정인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의 이익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계획 수립

○ 도시화,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른 불균형 방지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대처

□ 현 황

○ 목표년도 : 2006년(계획기간 10년)

○ 대상도시 : 93개도시(기수립 68, '95추진계획 25)

- 기 수 립 : 시급 7개도시, 읍급 21개 도시, 면급 40개 도시

○ '95추진계획

- 시 급(7) : 안양, 광명, 송탄, 구리, 동두천, 오산, 하남
- 읍 급(5) : 이천, 장호원, 신갈, 전곡, 포천
- 면 급(13) : 가남, 곤지암, 퇴촌(남종), 군남, 영북, 영중, 소흘, 현리, 청운, 양서, 양성, 양곡, 하성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도시계획(재정비) 변경결정 신청 : 14개 도시

○ 결정고시 완료(11) : 안양, 광명, 구리, 오산, 전곡, 포천, 하성, 현리, 양곡, 곤지암, 퇴촌(남종)

○ 경기도 검토중(3) : 송탄, 동두천, 영북

○ 용역완료(7) : 이천, 장호원, 가남, 군남, 영중, 소흘, 양성

○ 용역추진중(4) : 하남, 신갈, 청운, 양서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재정비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반영 입안실시

○ 지방의회(시·군)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○ 시장·군수의 입안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

— 도시계획관련법 규정 및 현지확인 등 계획의 적정성 검토

○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

○ 도시계획(재정비) 변경결정고시

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

○ 도시계획관련,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

— 도시계획법 제75조, 동법시행령 제58조의2

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

□ 현 황

○ 위원구성

위원수	당 연 직			위 축 직			
	계	행정부지사	관계국장	계	도의원	교 수	정부기관등
22명	5	1	4	17	2	12	3

○ 임기(위축직) : '95. 5. 1.~'97. 4. 30.(2년)

○ 위원회 개최 : 매월 1회(1, 8월 제외)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본위원회 개최 : 6회 53건 처리(재정비 19, 기타 34)

○ 소위원회 개최 : 6회 6건 처리(재정비 6)

□ 향후추진계획

○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

○ 도시계획(재정비) 변경결정에 따른 심의

○ 단위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심의

※ 필요시 소위원회(5~7명) 운영 : 본위원회 수입안전 처리

○ 도시계획위원 관리 : 신상변동에 따른 위·해촉

④ 도시계획 도로확충

○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

○ 시장·군수의 자원요청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

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항

□ 현 황

(단위:m, 백만원)

사 업 명	사 업 량			사 업 비			사업시행자
	시·군	개 소	연 장	계	도 비	시·군비	
개	23	138	46,995	124,173	87,470	36,703	
이월사업	23	70	28,608	70,374	48,680	21,694	시장·군수
'95 사업	23	68	18,387	53,799	38,790	15,009	"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- 측량 및 설계완료
- 유관부서(철도청 등) 협의
- 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
- 사업자금교부 : 87,430백만원

□ 향후 추진계획

-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보상 협의 : '95. 5.~10월
- 공사착공 및 준공 : '95. 7.~12월

⑤ 택 지 개 발

- 수도권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지 개발공급
 -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로 저렴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
 - 주변도시와의 조화로운 개발로 주거생활안정에 기여

□ 현 황

- 사업개요(총괄)

(단위:천㎡, 백만원)

구 분	지구수	면 적	사 업 비	수 용 계 획		비 고
				세대수(호)	인 구(인)	
계	62	(23,736) 78,433	16,888,897	558,500	2,133,170	
지 자 체	23	(3,416) 11,293	2,731,733	118,779	446,831	
주 공	16	(2,360) 7,800	1,956,805	88,204	334,129	
토 개 공	23	(17,960) 59,340	12,200,359	351,517	1,352,210	

※ ()는 천평

○ 추진실적('94까지)

○ 개발계획승인 : 32개 지구 61,348천㎡

○ 실시계획승인 : 25개 지구 56,819천㎡

○ 사업기간 : 1988~2000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개발계획승인 : 11개 지구 5,203천㎡

(지자체 3개 지구 777, 주공 4개 지구 1,695, 토개공 4개 지구 2,731)

○ 실시계획승인 : 4개 지구 2,442천㎡

(지자체 2개 지구 1,435, 주공 2개 지구 1,007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개발계획승인 : 19개 지구 11,882천㎡

○ 실시계획승인 : 33개 지구 19,172천㎡

⑥ 토지구획정리

-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전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
- 지역특성과 장래 성장발전을 감안, 주변도시와의 조화있는 개발

□ 현 황

- 사업량 : 13개 지구 → 8개 시·군 4,148㎡(1,255천평)
- 추진실적('94까지)
 - 사업시행명령 : 10개 지구 3,654천㎡
 - 사업시행인가 : 7개 지구 2,968천㎡
 - 환지계획인가 : 6개 지구 2,733천㎡
- 사업비 : 111,254백만원(체비지 매각대금)
- 사업기간 : '68~'98(사업시행자 : 시장·군수)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- 사업시행명령 : 3개 지구 494천㎡
- 사업시행인가 : 2개 지구 429천㎡
- 환지계획인가 : 3개 지구 664천㎡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사업시행인가 : 4개 지구 751천㎡
- 환지계획인가 : 4개 지구 751천㎡

⑦ 도립공원기반시설확충

- 도내 유일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수도권 주민의 1일 휴식공간으로 제공키 위하여 기반시설 및 환경보호시설 확충

□ 현 황

- 위 치 : 광주군, 성남시, 하남시 일원(도립공원지정 : '71. 3. 17.)
- 면 적 : 36,447천㎡(성내 2,212, 성외 34,235)
- 편익시설 : 주차장 19개소, 산책로 5개소/3,500m
화장실 75개소, 급수시설 7개소
- '95년도 사업계획
 - 사업량 : 공원기반시설 확충(매표소 2개소, 화장실 14개소, 간이오수처리장 1개소, 등산로 정비 등)
 - 사업비 : 4,000백만원(도비)
 - 사업시행자 : 광주군수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- 설계 용역 : '95. 1~6월말
- 토지감정 및 보상추진 : '95. 10~12월
-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개정공포 : '95. 6. 8.
※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허가를 광주군수에게 권한위임

□ 향후 추진계획

- '95. 12. 도립공원위원회 개최 : 용도지구 및 시설 변경결정 예정임.
※ '95. 10. 10. 위원회에서 재심의된 사항임.
- 공사착공 및 준공 : '95. 9.~'96. 12월말

○ 공원용도지구변경 : 집단시설지구를 취락지구로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해소

3. 주택건설

① 주택건설계획

○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

- 무주택서민 및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위주의 주택건설
- 연간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 공급

○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한 부실공사 추방

□ 현 황

○ 주택보급율

$$\frac{'80}{66.8\%} \Rightarrow \frac{'90}{70.4\%} \Rightarrow \frac{'91}{71.1\%} \Rightarrow \frac{'92}{72.1\%} \Rightarrow \frac{'93}{74.0\%} \Rightarrow \frac{'94}{74.9\%}$$

※ 전국 81.7%

○ 주택건설 중기계획 수립('93-'97년)

- 건설계획 물량 : 50만호(매년 10만호)
- '93-'94 건설실적 : 325천호

○ '95 주택건설 계획

(단위:호)

총 계	공 공 부 문						민간부문
	계	공공임대	공공분양	근로자주택			
				소 계	사원임대	근로복지	
132,250	62,528	9,878	33,973	18,677	6,629	12,048	69,722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우리 도는 타 시·도에 비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택수요가 급증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경제5개년 기간중 매년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, 시행하고 있음.

• 그러나 아직도 가구수에 비하여 '94년말 현재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임

○ '95 주택건설실적 : 93,038호(종합진도 70.3%)

• 공공부문 : 34,566호

지 자 체	190호
주 공	6,698호
주택업체	27,678호

• 민간부문(주택업체) : 58,472호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건설로 무주택 서민중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의 질 향상

- ┌ 18평 이하 소형주택 위주의 건설(70% 이상)
- └ 공공부문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용자

○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, 감독 강화

- ┌ 건설중인 공동주택 품질점사 강화
- └ 부실업체 제재 강화

○ 부동산 부기근절로 주택가격 안정 및 공급질서 확립

○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② 농어촌 주거환경개선

도시지역의 주거환경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대코자 함.

□ 사업개요

○ 근 거 : 내부부지침(내무부 기개 13650-223, '95. 2. 20.)

○ 사업시행자 : 시장, 군수

○ 사업추진 유형(3개 분야)

○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

○ 주택내부구조개선(부엌, 목욕탕, 화장실)

○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

○ 사업지원기준

○ 농어촌 주택 개량 : 동당 1,600만원 융자(5년거치 15년상환)

○ 주택내부 구조개선 : 동당 160만원 보조(부엌100, 화장실 60)

○ 농어촌 하수도 정비 : A형 마을(5억 5천만원), B형 마을(1억원)

○ 사업내용

(단위:동, 가구, 마을)

구분		총 계	사업대상 (불량주택)	실 적 ('76-'94)	'95	'96이후
사업내용						
주 택 개 량		344,441	174,861	75,001	2,544	97,316
내 부 구 조	화 장 실	344,441	144,179	92,457	2,961	48,761
	부엌·목욕탕	344,441	100,591	30,965	5,579	64,047
농어촌 하수도 정비		5,605	1,619	515	18	1,095

□ '95 추진계획

- 총 4개사업 : 53,909백만원 -

사 업 명		단 위	사업량	사 업 비 (백만원)					
				계	도 비	시군비	양여금	교부세	기타(기금, 농협)
계				53,909	13,332	3,107	2,700	6,277	28,493
주 택 계 량		동	2,544	40,704	8,141	-	-	4,070	28,493
내 부 구 조	부엌, 목욕탕	가구	5,579	5,579	2,231	1,674	-	1,674	-
	화 장 실	동	2,961	1,776	710	533	-	533	-
농어촌 하수도 정비		마을	18	5,850	2,250	900	2,700	-	-

※ 재원별

- 농촌주택개량 : 도비 20%, 교부세 10%, 국민주택기금 60%, 농협자금 10%
- 주택내부구조개선 : 도비 40%, 교부세 30%, 시·군비 30%
- 농어촌 하수도 정비 : 도비 39%, 시군비 15%, 양여금 46%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사업추진 시책설명회 : 1회

- 대 상 : Package Project 추진마을(A형)-9개시군 9개소
- 설명내용 : 사업의 추진목적, 배경, 사업비 지원, 추진요령 등

○ 사업추진상황 지도, 점검 : 3회

- 대 상 : 24개 시군
- 점검결과(종합진도) : 농어촌주택개량(93%), 내부구조개선(94%),
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(77%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사업추진 상황 수시점검 및 독려
-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 추진완료

③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

도시영세민 밀집거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"삶의 질"을 향상시켜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자립의욕을 고취

□ 사업개요

○ 근 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
※ '89. 4. 1. 법률 제4115호로 제정하여 '99. 12.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임.

○ 사업시행자 : 시장, 군수

○ 사업지구 현황

- 총지구수 : 75지구
- 완료지구 : 44지구(지구지정없이 사업추진 완료)
- 대상지구 : 31지구(지구지정 완료 27, 준비중 4)

○ 사업내용

(단위:억원)

구 분	총 계 획		'94 까지		'95 계획		'96 이후	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공공기반시설	771건	1,012	653건	572	42건	130	76건	310
주 택 개 량	24,794호	—	10,982호	—	1,828호	—	11,984호	—

□ '95 추진계획

○ 공공기반시설

○ 사 업 량 : 42건(6개시 14개 지구)

- 도로개설포장 14건(5.0km)
- 상하수도 20건(9.3km)
- 복지회관 및 어린이놀이터 4건(570평)
- 방범가로등 기타 4건

○ 사 업 비 : 12,993백만원(교부세 1,231, 양여금 330, 도비 5,296, 시·군비 6, 136)

○ 주택개량(주민자력 개량)

○ 사 업 량 : 1,828호(성남시의 7개 시·군 22개 지구)

※ 호당 15백만원 융자지원(재정투 3, 주택기금 12)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공공기반시설(진도 77%)

- 준 공 : 7건
- 시 공 중 : 29건
- 설계 및 보상협의중 : 5건
- 사업계획 변경 추진중 : 1건

○ 주택개량(진도 58%)

- ┌ 허 가 : 1,149호(착공 481, 준공 668)
- └ 미 허 가 : 679호

□ 향후 추진계획

- 공공기반시설사업중 설계 및 보상협의 중인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
고
- 주택개량 미허가분은 조속 허가 처리토록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

4. 지적관리

①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이용실태조사

-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
- 지가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

□ 현 황

- 근거법령 : 국토이용관리법
-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: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31개 전 시·군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- 실태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: 1회('95. 4. 4.)
- 토지이용심사위원회 개최 : 3회 18건
- 토지거래허가토지 사후이용실태조사
 - 서면조사 : '95. 4. 1~6. 30
 - 현지조사 : '95. 7. 1~9. 30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조사결과 분석 : '95년 11월
- 토지이용심사위원회 개최 유휴지결정 : '95년 12월
- 시·군 통지 및 조치결과 보고 : '95년 12월
- 수시조정 : '95. 5. 31
 - 조정대상 : 전년도 대비 과표인상율이 현격히 높은 토지와 인근 토지와의 불균형 토지
 - 조정토지 : 18,298필 (38,359천㎡)
 - 상 향 : 8,248필 (14,030천㎡)
 - 하 향 : 10,050필 (24,329천㎡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토지과표 공시지가 전환대비
 - 지방세제 개편안 정기국회 상정

②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(건설교통부 지침)에 의거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

□ 현 황

- 근거법령 :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- 조사대상 : 2,859,555필
 - ※ 표준지 공시(건설교통부) : 47,576필(1.7%)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-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: '95. 1~6월

○ 결정공고(시장·군수) : '95. 6. 30

○ 재조사청구 처리 : '95. 7. 1~9. 28

(단위:필)

접 수			처 리					
계	상향요구	하향요구	계	상향조정	하향조정	기 각	각 하	기 타
12,923	3,004	9,919	12,923	1,806	4,848	5,696	457	116
(100%)	(23%)	(77%)	(100%)	(14%)	(38%)	(44%)	(3%)	(1%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'96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자료정비

○ 조사요원 교육 : 2회

③ 토지과표 현실화추진

○ 『신경제 5개년 계획』의 토지과표현실화 계획('93~'97)에 의거 공시지가대비 30%~40% 수준으로 조정

○ 지방세제를 개편 '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대비

□ 현 황

○ 근거법령 :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의2
'95토지과표조정지침(내무부)

○ 과세대상 : 2,732천필지 8,362백만㎡

○ 조정기준 : 정기 및 수시조정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정기조정 : '95. 1. 1 기준

—조정토지 : 1,739천필지(과세대상의 63.6%)

○ 시·도간 구역변경에 따른 과표정비

-구역변경 : '95. 3. 1(시행)

-정비토지 : 242천필지 591, 719천㎡

이 관 : 서울, 인천, 강원도 : 242,123필지 591, 730천㎡

(강화, 옹진, 김포 집단면일원 및 광명, 고양, 여주군 일부)

편 입 : 부천, 광명(서울, 인천) : 13필지 11천㎡

④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

○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실제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도록 분할 정리하여

○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

□ 현 황

○ 근거법령 :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

○ 대상토지 : 2,564필지

○ 공유자 총수의 1/3이상인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

○ 1년이상 자기 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

○ 시행기간 : 1995. 4. 1~2000. 3. 31(5년)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시·군·구 실무자 교육 : '95. 3. 31

○ 시·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: '95. 5. 30

○ 추진실적 : 분할신청 147건 440필지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분할촉람 및 지적공부 정리, 등기촉탁 등의 행정지도

○ 적극적인 대민 홍보 실시

⑤ 지적전산자료 정비 및 운영

토지관련 변동자료를 적기에 입력하고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제공과 대
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

□ 현 황

- 지적전산자료 : 5,386천건(토지·임야대장, 공유지연명부)
- 전산장비 : 주전산기 5대, 단말기 122대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- 토지이동,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: 847천건
- 민 원 처 리 : 5,149천건
- 행정구역변경정리 : 743천건(강화, 옹진, 김포 검단면 등)
- 전산자료 제공 : 4,141천건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지적전산자료의 지속적 유지관리
 - 변동자료(토지이동 및 소유권)발생즉시 정리 : 연중
 - 지적전산 통계 정비 : '95. 12월말 까지
- 민원처리 및 자료제공
 - 지적 제 등본·열람 발급 : 연중
 - 국·공유지 재산자료제공 및 병역감면자 재산조회 등 : 연중
 - 정책자료 제공 : 국토정보센터(내무부 : 일일발생분 전량)

IV. 현안사항

1.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

□ 추진경위

- '94. 11. 7 : '90~'91년 건설분 안전점검 실시지시(건설교통부)
- '94. 11. 29 : '92년이후 건설분 안전점검 실시지시(건설교통부)
- '95. 7. 8 : 안전점검 중간발표(대한건축학회, 경기도)
- '95. 7. 13 : '92년이후 건설분 재조사 지시(경기도)
- '95. 11. 17 : 안전점검 결과 발표(대한건축학회, 경기도)

□ 현 황

- 점검대상 : 아파트 및 주차장

(단위:동)

구 분	계	분 당	일 산	평 촌	산 본	중 동
계	4,160	1,567	1,125	499	487	482
'90~'91건설분	1,235	558	148	220	175	134
'92이후건설분	2,925	1,009	977	279	312	348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['90~'91 건설분]

- 대 상 : '90~'91 자재 파동시 건축한 아파트 1,235동 및 주차장 355개소
- 점검기간 : '94. 11~'95. 11
- 점검주체 : 대한건축학회 및 6개 전문 안전진단기관
- 점검요령
 - 콘크리트 강도, 염분도, 철근부식도, 구조도서에 의한 검사
 - 소요비용부담 : 사업주체(시공업체)

○ 점검결과 : 보수, 보강대상 아파트에 대한 조치 필요

- 보강 대상 : 4동
- 방식조치대상 : 41동
- 보수 대상 : 14동

['92이후 건설분]

구 분	1 차 조 사	재 조 사
점검대상	아파트 2,925, 주차장 755	아파트 1,685, 주차장 496
점검기간	'94. 11~'95. 5	'95. 8~'95. 10
점검주체	해당시, 감리단, 시공업체	해당시, 감리건축사, 시공업체 기술사, 입주민대표, 관리사무소장
점검결과	아파트 2개동, 주차장 11개소 정밀 진단 의뢰하여 보수 보강조치 완료	아파트 9개동, 주차장 7개소 정밀 진단 의뢰중

□ 향후 추진계획(대책)

- '90~'91년 건설분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·보강 및 방식 조치토록 해당 시에 지시
- '92년 이후 건설분 중 재조사 결과 아파트 9개동, 주차장 7개소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·보강 조치

2.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

□ 현 황

○ 인수단 운영

○ 인수단장 : 당해 시장

○ 인수단 구성

—인수단(154명) : 해당 시의 소관 실·과별 구성

—자문기구(62명) : 관계전문가 및 지역대표로 구성

□ 그간의 추진상황

○ 인수실적-17개 유형시설(완공 98% ⇒ 인수 81%)

○ 도시별 : 분당 85%, 일산 67, 평촌 96, 산본 99, 중동 75

○ 시설별 내역

('95. 10월말현재)

시 설 물	단위	설 치 계 획	완 공		인 수 실 적	
			물 량	%	물 량	%
도 로	km	615	608	99	415	67
공 동 구	km	37	37	100	13	35
가 로 등	천주	17	17	100	15	88
교량등도로시설물(5종)	개소	197	196	99	127	64
공 원	개소	258	255	99	236	91
녹 지, 공 공 공 지	천㎡	3,092	2,986	96	2,164	70
상 수 도	km	445	445	100	314	70
배 수 지	개소	7	7	100	3	43
하 수 도	km	1,081	1,081	100	182	17
도 서 관	개소	2	2	100	2	100
소 각 장	"	3	1	33	1	33

□ 문제점

○ 완공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하자 및 부실공사로 인수가 지연

○ 육안검증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인수가 부진한 실정임

※ 공동구 35% 소각장 33% 하수도 17% 등

□ 향후 추진계획(대책)

○ 하자발생 시설물은 시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 보수조치후 인수

○ 지하 매설물은 CCTV촬영 등으로 완벽한 검사후 금년목표치 인수

$\frac{95.10월말}{81\%}$	$\Rightarrow$	$\frac{95년말}{91\%}$	$\Rightarrow$	$\frac{96년이후}{100\%}$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※ '94년 인수실적 : 36%

3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

-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사업을 미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
-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하고,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는 가능한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

□ 사업개요

○ 대상도시 : 93개 도시(시 14, 읍 26, 면 53)

○ 사업량 : 8,331건/141,299천㎡

시설별 구분	계	도 로	광 장	공 원 유원지	녹 지	운동장	학 교	기 타
건 수	8,331	7,202	150	497	169	15	91	207
규모 (천㎡)	141,299	42,595 (2,691천㎡)	3,208	75,275	7,239	1,975	1,359	9,648

○ 추정사업비 : 402,497억원(사업비 93,508, 용지비 308,989)

□ 현 황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행현황

(단위: 건, 천㎡)

도시계획결정		사업시행완료			미 집 행	
건 수	면 적	건 수	면 적	시설율	건 수	면 적
25,017	372,793	16,686	231,494	62.1	8,331	141,299

※ 10년미만 : 3,745/48,055, 10~20년 : 3,860/58,981, 20년이상 : 726건/34,263천㎡

□ 문제점

- 도시계획시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있음으로 인하여
 - 행정의 공신력 실추
 -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반복민원 지속
- 도시계획시설 투자재원 부족
 - 집행 실현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도시계획 결정
 - 현재의 조세체제로는 도시계획세의 도시계획시설 투자미비
(’94년의 경우 투자액의 51.1%에 불과)

□ 향후 추진계획(대책)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강구
 -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된 시설과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
 -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을 긍정 검토
 - 연차별 집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
 - 각종 도시계획사업(재개발, 토지구획정리사업, 택지개발사업) 등에 의한 기반 시설 확보추진
- 도시개발사업 종합지원계획 수립
 - 동원가능한 재원 일괄관리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투자
(도시계획세, 양여금, 개발부담금 등)
 - 도시별 시설율을 고려하여 낙후지역 우선투자

4. 주택·건축분야 국제교류

□ 현 황

- 상 대 국 : 일본 후쿠오카현
- 목 적 : 양 도·현간 주택건축분야 상호정보교환 및 업무교류
- 교류방법 : 매년 윤번제로 상호방문

□ 추진경위

- '94. 11. 1 : 후쿠오카현 건축과장(오카자키 겐지)이 건설부 방문시 우리나라 시·도와의 교류희망(건설부에서 경기도 추천)
- '94. 12. 6 : 후쿠오카현의 교류(안)에 대한 검토회신(경기도 → 후쿠오카현)
- '95. 1. 23 : 실무조사단 방문일정 협의(후쿠오카현 → 경기도)
- '95. 3. 6-3. 7 : 후쿠오카현 실무조사단 경기도 방문(9명)
- ※ 교류 협의서 조인내용
 - 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(경기도 또는 후쿠오카현)
 - 회의개최 비용은 개최국 부담(항공료, 체류비 제외)
 - 제1회 회의(세미나)는 후쿠오카현에서 개최('95년)
- '95. 7. 24 : 세미나 개최에 따른 토의주제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현지방문 협의의견 송부(경기도 → 후쿠오카)
- '95. 11. 23~11. 27(5일) : 일본후쿠오카현 세미나 참석(5명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'96 주택·건축분야 세미나 개최 준비
 - 개최일시 : '96년 10월
 - 장 소 : 경기도
 - 참석인원 : 20명 내외

5. 노후·불량 건축물 안전관리

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불안전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건축 유도

□ 현 황

- 대 상 : 13개 시·군 16개소 66동 1,945세대

- ☐ 철거대상 : 4개소 19동 277세대
☐ 특별관리대상 : 12개소 47동 1,668세대

☐ 그간의 추진실적

☐ 노후·불량 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지도·점검

- ☐ 시·군 및 도 합동점검 : 5회
☐ 도 도시안전점검대책부 점검 3회

※ 도시안전점검대책부 구성 : 도시국장외 9명(공무원 5, 전문가 5)

☐ 문제점

- ☐ 노후, 불량 건축물은 개인소유 시설물로 철거 등 강제집행 불가
☐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

☐ 향후 추진계획(대책)

- ☐ 사고예방 및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전담부서 설치 또는 인력보강
☐ 노후시설의 보수,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

V. '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

(단위:건)

지정요구 및 지적건수	조치내역				
	계	완료	추진중	향후검토	비고
9	9	7	2		

□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
상임위	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 치 결 과	소관실과
도시위	○ 5개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재발 방지대책	○ 안전진단 추진 • '91이전 건축분 -대상 : 355개소 -기간 : '94. 11~'95. 1 -진단기관 : 대한건축학회 등 6개 안전진단기관 -결과및조치 :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 • '92이후 건축분 -대상 : 1차 755, 2차 496개소 -기간 및 진단기관 1차 : '94. 11~'95. 5(해당시, 감 리단, 시공업체) 2차 : '95. 8~'95. 10(해당시, 감 리단, 시공업체와 관리소 장, 입주민대표 추가참 여) • 결과 및 조치 -1차 진단결과 구조상 이상은 없었 으나 주민불안감 해소에 미흡한 것 으로 판단되어 입주민대표, 관리소 장 등을 참여시켜 2차 조사 실시하 고 하자가 많은 주차장 7개소에 대 해 정밀안전진단 의뢰후 결과에 따 라 조치(추진중)	신도시

상임위	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 치 결 과	소관실과
도시위	○ 5개신도시 입주민 전출입현황 중 전출이 많은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 ○ 신도시건설관련 해사사용량 및 업체별 시공현황자료 제출 ○ (주)한양이 신도시에서 건설한 아파트의 사전입주현황과 방치사유	○ 인구이동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 분석결과 일반적인 주민이동으로 판단되어짐 ┌ 기존도시 인구이동을 : 25% └ 신 도시 인구이동을 : 16% ○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시설의 조기개설로 입주민의 정착의식 고양시책 추진(완료) ○ 해사를 사용한 건설업체 현황은 파악된 바 없으며, 해사사용과 부설시공에 따른 안전도 제고를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 11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있음. · 기간 : '94. 11~'95. 11 · 진단기관 : 대한건축협회 등 전문안전진단기관(추진중) ○ 평촌 신도시에서 발생 주택의 불량시공과 상가 미완공으로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입주를 시작하여 사전입주가 발생되었음. · 25개동, 3,227세대 ○ 사전입주에 따른 사업주체 고발 : 6회 ○ 아파트 사전입주방지 행정지시 : '95. 1. 18(완료)	신도시 "

상임위	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치결과	소관실과
도시위	○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무주 부동산의 처리절차 및 대책 ○ 주택사업자에게 학교시설비를 부담시킬 용의와 학교 용지가 미확보된 준농림지 개발에 대한 대책 ○ 준공검사 미필아파트에 대한 대책 및 입주자 피해방지 대책	○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복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, 시장, 읍·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 지급 ○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한 토지는 공시송달후 보상금 공탁처리(완료) ○ 주택승인시 사업자가 일정금액의 학교시설 설치부담금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'94. 9. 26. 건설부에 기이 건의 ○ 준농림지역 사업승인시는 “사전결정” 제도를 활용하여 적정한 주택건설이 되도록 유도(완료) ○ 사용검사 미필아파트의 위반사항 시정 및 미공사분에 대한 사용검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'95. 2. 9 시·군에 지시 · 기관장이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방안 강구 · 공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독려하여 조속 공사완료 촉구 · 사업주체가 부도난 경우 입주자 등이 사용검사를 득할 수 있도록 조치(완료)	도시과 주택과 “

상임위	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치결과	소관실과
도시위	○ 주공에서 건축한 송탄 세경아파트를 외국 군 부대와 직접 임대계약 함은 불합리하며 '93년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 ○ 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인해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및 주변토지 가격폭등 등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	○ '93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송탄 주공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420세대중 330세대를 주한미군측과 계약하여 임대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· '93. 12. 6 :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였으며 · '93. 12. 23 : 대한주택공사로부터 "임대계약이 만료되는 '96년이후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"라는 통보를 기이 받았음. ○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 지역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노력하겠음. (완료) ○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'94년부터 지정되어 지가가 부분적으로 상승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지정 전후의 공시지가를 양주군의 19,051필지를 표본으로 조사 비교한 바, 약 10% 상승 ○ 준농림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시 방지대책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심사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며 투기의혹이 있는 외지인의 토지거래는 허가 즉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처(완료)	주택과 주택과 지적과

상임위	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치결과	소관실과
도시위	○ 현실과 다른 토지등급 결정에 대한 견해와 대책	○ 신경계 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방세제를 개편 '96년부터 공시지가로의 전환 추진 ○ 세부담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지난 '93년부터 연차적 조정, '95년도에는 공시지가의 30% 수준으로 평준화 조정(완료)	지적과

V. 부록

1. 도시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

- 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
- 비효율적인 운영요소를 개선하여 도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도시행정 역할 뒷받침

□ 현 황

위원회 명칭	기 능	위 원 수			임 기	근 거 법 규
		계	당연직	위촉직		
계		77	29	48		
도시계획위원회	도시계획심의 및 자문	22	5	17	'95. 5. 1~'97. 4. 30 (2년)	도시계획법제75조
건축위원회	건축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 및 심의	24	8	16	'94. 2. 1~'96. 1. 31 (2년)	건축법제4조
토지이용심사위원회	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 심사 및 유흥지 결정	7	3	4	'94. 1. 1~'95. 12. 31 (2년)	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27조
지적위원회	지적측량 적부심사	8	4	4	'95. 5. 18~'97. 5. 17 (2년)	지적법제42조
도립공원위원회	도립공원 계획결정 및 변경	16	9	7	'94. 7. 11~'96. 7. 10 (2년)	자연공원법제19조

※ 위촉직 위원구성 : 총 48명(도의원 2, 교수 36, 정부투자기관 임원 3, 전문가 4, 변호사 2, 기타 1)

2. 도시계획결정권한

□ 근 거

- 도시계획법제10조, 시행령제6조
- 경기도사무위임규칙제2436호('93. 9. 24)

□ 건설부장관 권한

○ 도시기본계획 승인

○ 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

-특정시설제한구역, 시가화 조정구역, 상세계획구역, 광역계획구역, 개발제한구역, 도시개발예정구역

○ 광역 도시계획시설

-경부선(수원~천안) 복복선 전철사업

-성남 저유소 시설

-군포시 부곡 복합화물터미널

-서해안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철도

※ 국가계획과 관련한 경우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도시계획입안 결정

□ 도지사 권한

○ 도시계획구역의 결정

-구역면적의 확장, 축소 및 구역분리

○ 용도지역의 결정(4개 지역)

-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

○ 용도지구의 결정(13개 지구)

-통치지구, 미관지구, 고도지구, 도시설계지구, 보존지구 등

○ 도시계획사업 계획의 결정(5개 사업)

-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재개발사업

-일단의 주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

-시가지 조성사업

○ 도시계획시설의 결정

-노폭 25m이상의 도로와 이에 접하는 광장, 자동차정류장, 철도 등 교통운수시설

- 공원, 유원지 등 도시공간시설
- 유통업무설비, 가스공급설비,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등 공급시설
- 전문대학, 대학교, 종합운동장 등 문화복지시설
- ※ 도지사는 도시계획 입안권한 없음.

□ 시장 권한

○ 도시계획시설의 결정

- 노폭 25m미만의 도로와 연결되는 광장, 주차장
- 연구시설, 수도, 시장, 어린이공원, 폐차장, 자동차학원
-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
-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

○ 지형도의 승인고시

○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

※시지역의 국가계획을 제외한 입안은 시장의 권한사항임.

□ 군수 권한

○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

○ 지형도의 승인고시

○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

※ 군지역의 국가계획을 제외한 도시계획 입안은 군수권한 사항임.

3. 도시계획시설 관리

-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의 확행 및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집행
- 불요불급한 시설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심층 검토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

- 도로 등 24,702개 시설-364.5km, 7,516km

○ 도시계획시설의 종류:52개 시설(법 40개 시설, 시행령 12개 시설)

- 교통운수시설:도로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, 철도, 궤도, 삭도, 운하, 항만, 공항,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
(11)
- 도시공간시설: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관망탑, 공공공지, 청소년수련시설
(7)
- 유통 및 공급시설:시장, 유통업무설비, 수도, 공동구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, 방송통신시설, 열공급설비
(9)
- 공공문화 복지시설:운동장, 공용의 청사, 학교, 도서관, 연구시설, 문화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
(8)
- 도시방재시설:하천, 저수지, 방풍설비, 방수설비, 방화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, 유수지
(8)
- 보건위생시설:하수도, 도살장, 공동묘지, 화장장, 장례식장, 폐기물처리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, 종합의료시설, 폐차장
(9)

※ 결정 예외시설(법 제16조, 령 제12)

- 관망탑, 공공용지, 공용의 청사, 도서관, 저수지, 방풍, 방수, 방화, 방조설비, 사방설비
- 연구시설, 문화시설, 종합의료시설, 사회복지시설, 방송통신시설, 자동차중기검사시설, 폐차장, 공공직업훈련시설, 자동차중기학원, 청소년수련시설, 장례식장
- 시장 및 운동장(종합운동장 및 9홀이상 골프장 제외)

간 부 명 단

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	연령	전화번호
도 시 국	도시국장	시설서기관	이창우	53	42-2341
신도시종합 지원담당관실	담 당 관	지방시설서기관	김만재	55	42-7134
	행정지원계장	지방행정사무관	백대현	46	
	기술지원계장	지방건축사무관	박영식	48	
도 시 과	도 시 과 장	지방시설서기관	김창성	53	42-2350
	도시행정계장	지방행정사무관	이규형	52	
	도시계획계장	지방토목사무관	임규배	50	
	시설계획계장	지방토목사무관	강래천	43	
	도시개발계장	지방토목사무관	김재기	52	
주 택 과	주 택 과 장	건축사무관	최민석	54	42-4970
	주택행정계장	지방행정사무관	연대훈	48	
	주택관리계장	지방건축사무관	김충일	50	
	건축지도계장	지방건축사무관	이화순	34	
지 적 과	지 적 과 장	지적사무관	박광웅	55	42-4109
	토지관리계장	지방행정사무관	이종화	48	
	지 적 계 장	지방지적사무관	김재원	51	
	지적정보계장	지방지적사무관	김성일	51	